

부산광역시 금정구  
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('16~'20)

2016. 11.

부산광역시 금정구

부채관리관	이 정 상 (인)
담당자	손 세 은 (인)

# I. 기관현황

## 1. 지방자치단체

○ 조직 및 정원 \* '16년 7월 기준

- ▷ 3국, 1실, 1단, 18과, 보건소, 도서관, 문화회관, 의회사무국, 17개동
- ▷ 공무원 정원 : 총 743명

○ 예산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기금
349,045	326,590	18,609	3,846

▶ '16년 예산규모(1회 추경예산 기준)

○ 재정자립도

(단위 : 백만원, %)

재정자립도 (B/A)	세입 합계 (A=B+C+D)	자체세입 (B)	의존재원 (C)	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(D)
17.78	326,590	58,052	241,434	27,104

▶ '16년 예산규모(1회 추경예산 기준)

○ 재정자주도

(단위 : 백만원, %)

재정자주도 (B/A)	세입 합계 (A=B+C+D)	자주재원 (B)	보조금 (C)	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(D)
32.20	326,590	105,176	194,310	27,104

▶ '16년 예산규모(1회 추경예산 기준)

## 2. 지방공사.공단 ▷ 해당사항 없음

## 3. 출자.출연기관

○ 출자기관 0개, 출연기관 1개

(단위: %, 명, 억원)

유형	기관명	설립연도	지분율	조직	정원	예산규모	주요사업내용
출연기관	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	2016.6.2.	100	1사무처, 3팀	12	811	-주민밀착형 문화환경 조성 -생활문화의 진흥 -글로벌 문화교류 확산

▶ '16년 예산규모(1회 추경예산 기준)

## II. 통합부채 현황 분석

### ①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

(단위: 억원)

구분	'14년	'15년
통합자산	9,964	10,130
통합부채	96	103
1. 유동부채	54	56
· 이자부금융부채	0	0
· 기타금융부채	46	51
· 비금융부채	8	5
2. 장기차입부채 (이자부금융부채)	0	0
3. 기타비유동부채	41	47
· 기타금융부채	2	1
· 비금융부채	40	46
통합자본	9,868	10,026

\* 「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」에 따라 산출 ('14년,'15년 결산기준)

### ② 내부거래(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)

(단위: 억원)

기관명	재무상태표 계정과목(COA)	재무상태표 잔액	상대거래 기관	내부거래 내용
부산광역시 금정구	해당	사항	없음	

### ③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

(단위: 억원)

구분	'14년	'15년
통합자산	9,964	10,130
통합부채	96	103
1. 유동부채	54	56
· 이자부금융부채	0	0
· 기타금융부채	46	51
· 비금융부채	8	5
2. 장기차입부채 (이자부금융부채)	0	0
3. 기타비유동부채	41	47
· 기타금융부채	2	1
· 비금융부채	40	46
통합자본	9,868	10,026

\* 「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」에 따라 산출 ('14년,'15년 결산기준)

#### 4 우발부채세부내역(15년 결산기준)

#####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

(단위: 억원)

구분	우발부채 현황				
	계	지방자치 단체	지방공사 · 공단	출자· 출연기관	내부거래 제거
계		해당	사항	없음	
지급보증(보증채무부담행위)					
채무부담행위					
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					
계약상 약정	재매입약정				
	매입확약				
	손실부담계약				
	책임분양확약 등				
	산하기관 차입금상환,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				

##### ② 지급보증(보증채무부담행위)

(단위: 억원)

기관명	발생연도	행위명	제공 받은자	보증 채무액	부채 계상액	채권자	제공사유
부산광역시 금정구		해당	사항	없음			

##### ③ 채무부담행위

(단위: 억원)

기관명	발생연도	행위명	내용	채무부담 행위금액	피제공자	부채 계상액	내용 설명
부산광역시 금정구		해당	사항	없음			

#####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(최소운영수입보장, 비용보전방식)

(단위: 억원)

기관명	사업명	운영권자	총 사업비	계약 기간	재정지원 협약내역*	최근3개년 재정지원 발생액(지급액)**			향후부담 추정액*** (우발부채)
						'13	'14	'15	
부산광역시 금정구			해당	사항	없음				

⑤ 계약상 약정내용(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)

(단위: 억원)

기관명	약정유형*	행위명	사업자	약정금액 (최대손실추정액, 우발부채)	총 사업비	사업기간	약정내용
부산광역시 금정구			해당	사항	없음		

\* 재매입약정(토지리턴제 등), 매입확약, 손실부담계약, 책임분양확약, 공기업이나 출자/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, 미납출자금, 차입금약정,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

⑤ 부채상세분석(15년 결산기준)

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

(단위: 억원)

계정과목	계*	만기구조				
		1년 이내 (16년 상환)	2년 (17년 상환)	3년 (18년 상환)	4년 (19년 상환)	5년 이상 (20년 이후상환)
총계						
부산광역시 금정구 (내부거래)		해당	사항	없음		
비율						

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(잔액기준)

(단위: 억원)

기관명	발행 일자	'15년말 잔액*	발행 유형**	금리	만기	발행 목적	내부거래관련	
							여부	상대기관
부산광역시 금정구			해당	사항	없음			

③ 이자비용(당해연도 발생기준)

(단위: 억원)

기관명	이자부 금융부채*	금리	'15년 이자비용**	지급처	내부거래관련	
					여부	상대기관
부산광역시 금정구		해당	사항	없음		

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

(단위: 억원)

기관명	사업명	사업기간	준공시기	준공후5년초과 여부(O, X)	이자부 금융부채 잔액*	관련자산 규모**	부채발행 원인분류**
부산광역시 금정구			해당	사항	없음		

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

(단위: 억원)

세입구분	기관별분류				비고 (세입내역설명)
	계	자치단체	지방공사· 공단	출자·출연 기관	
합계	3,622	3,622	-	-	
①경상수입	642	642	-	-	
· 지방세	403	403	-	-	
· 세외수입	239	239	-	-	
· 매출액 등	-	-	-	-	
②이전수입	2,354	2,354	-	-	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등, 보조금
③자본수입	-	-	-	-	
④기타	626	626	-	-	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

\*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(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 포함)

\*\* 용어정의

- ① 경상수입 :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(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,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,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)
- ② 이전수입 :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 (국고보조금, 교부세,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,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)
- ③ 자본수입 : 자금차입, 보유자산 매각,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 활동에 의한 수입

⑥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

- ① 지방자치단체 : 지방채가 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수지상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음.

## 7 외부거래 내역

### 가. 1차 외부거래 내역(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)

기관명	재무상태표 계정과목(COA)	재무상태표 잔액	상대거래 기관	외부거래 내용
부산광역시 금정구	해당	사항	없음	

### 나. 2차 외부거래 내역(광역자치단체간 거래)

기관명	재무상태표 계정과목(COA)	재무상태표 잔액	상대거래 기관	외부거래 내용
부산광역시 금정구	해당	사항	없음	

### III. '16~'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

※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

#### 1 '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

##### 가. '16년 통합부채 추정

○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

(단위: 억원)

구분		15년				16년(추정)			
		계	자치 단체	공사 공단	출자· 출연	계	자치 단체	공사 공단	출자· 출연
통합부채 계		103	103	-	-	103	103	-	-
유동	이자부금융	-	-	-	-	-	-	-	-
	기타금융	51	51	-	-	51	51	-	-
	비금융	5	5	-	-	5	5	-	-
비유동	이자부금융	-	-	-	-	-	-	-	-
	기타금융	1	1	-	-	1	1	-	-
	비금융	46	46	-	-	46	46	-	-

○ 내부거래

- 관계기관간 : 해당사항 없음

○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

(단위: 억원)

구분		15년				16년(추정)			
		계	자치 단체	공사 공단	출자· 출연	계	자치 단체	공사 공단	출자· 출연
통합부채 계		103	103	-	-	103	103	-	-
유동	이자부금융	-	-	-	-	-	-	-	-
	기타금융	51	51	-	-	51	51	-	-
	비금융	5	5	-	-	5	5	-	-
비유동	이자부금융	-	-	-	-	-	-	-	-
	기타금융	1	1	-	-	1	1	-	-
	비금융	46	46	-	-	46	46	-	-

#### ※ 추정방법 설명

- ① 금융부채(유동, 비유동) :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
- ② 유동비금융부채 :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, '15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
-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: 장기선수금(공사계약관련)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\*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, 나머지는 '15년 잔액유지



## 나. 우발부채

(단위: 억원)

구분	'15년 현황					'16년(추정)				
	계	자치 단체	공사· 공단	출자· 출연	(내부 거래)	계	자치 단체	공사· 공단	출자· 출연	(내부 거래)
계			해	당	사	항	없	음		
지급보증(보증채무부담행위)										
채무부담행위										
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										
계 약 상 약 정	재매입약정									
	매입확약									
	손실부담계약									
	책임분양확약 등									
	산하기관 차입금상환,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									

## ② 통합부채 관리방안

### 가. 향후 5년간('16~'20년) 중점관리대상 부채

####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

(단위: 억원)

기관명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부산광역시 금정구		해당	사항	없음		
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						

####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

(단위: 억원)

기관명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부산광역시 금정구		해당	사항	없음		
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						

####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

(단위: 억원)

기관명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부산광역시 금정구		해당	사항	없음		
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						

## 나.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

### ○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

(단위: 억원)

구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계(①-②)*	0	0	0	0	0
① 증가 소계	0	0	0	0	0
② 감소 소계	0	0	0	0	0

○ 재무건전성 개선방안(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) : 해당사항 없음.

## ③ 우발부채('16~'20년)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

(단위: 억원)

구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계		해당	사항	없음		
지급보증(보증채무부담행위)						
채무부담행위						
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						
계약상 약정	재매입약정					
	매입확약					
	손실부담계약					
	책임분양확약 등					
	산하기관 차입금상환,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					

## 붙임 1 「지방재정법」

제44조의2(예산안의 첨부서류)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 다만,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2. 세입·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
3.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,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
4.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,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
5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(추정액 기준)
6.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(예산액 기준)
7. 성인지 예산서
8. 성과계획서
9.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
10. 명시이월 명세서
11. 중기지방재정계획서
12. 공유재산 관련 서류
13.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
1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
2. 통합부채[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"지방공기업"이라 한다)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기관·출연기관(이하 "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"이라 한다)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. 이하 같다]
3. 우발부채(보증·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4.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
5.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
6. 지방교부세 감액사항
7.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
8. 지방세지출현황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87조의3(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.>

1.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

2.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

3.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.>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,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.>